

定 款

학 교 법 인 새 빛 학 원

학 교 법 인 새 빛 학 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계통 학원으로서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켜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할 수 있는 중견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새빛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안산대학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2. 안산대학교부설석학유치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일동))]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답동로 30번길 10(율목동)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③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대학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회계는 산학협력단장이 편성하여,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집행한다.

④ 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하여 따로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1조의 2(예산편성) ① 대학의 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대학 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통지 받은 다음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한다.

제11조의 3(추가경정예산) ① 이사장과 대학의 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한다.

제11조의 4(결산) ① 이사장과 대학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한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한다.

④ 이사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회계감사) 이 법인은 자체감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 14조 - 제18조 :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자이어야 한다.)
3.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안산대학교 총장과 인천기독병원의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9 조의 2(상근임원)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되 그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안산대학교 총장과 인천기독병원의 원장이 이사인 경우 그 임기는 총장과 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20조의 2(임원의 자격) 임원(개방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에 충실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 장로 또는 권사이어야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감사 및 인천기독병원의 원장은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되,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한다)가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개방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요청일부부터 30일내에 이사회에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 22 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 ④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원으로 추천하거나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제22조의 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사임서를 제출 한 때
3.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을 훼손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등을 선동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한 때
6.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8.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 23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4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본 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24 조의2(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 방법)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개방감사는 단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 중 목사, 장로 또는 권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 이었던 사람
4.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었던 사람

제 24 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안산대학교 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6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업체에 경영회계를 감사할 뿐 만 아니라 그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어 업체에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감사하여야 한다.

제 27 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8 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대학의 장 및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1 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의 2(이사회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2 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대학평의위원회

제32조의 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 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의 3(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의 평의원은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교인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수가 평의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학의 장이 위촉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32조의 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13인으로 구성한다.

1. 교원 4인 : 전임교원
2. 직원 2인 : 정규직원
3. 조교 1인 : 조교
4. 학생 2인 : 총학생회장과 대의원의장
5. 동문 1인 : 총동문회장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교인 3인

제 32 조의5(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대학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장 또는 대학의 장이 요청한 사항

제32조의 6(평의원 회의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이사장 또는 대학의 장의 심의 요청을 받은 후 요청 기간 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대학의 장은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2조의 7(운영)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등

제 33 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의료사업을 경영한다.

제 34 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3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인천기독병원을 경영한다.

제 35 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답동로 30번길 10(율목동)에 둔다.

제 36 조(관리인 및 직원임용) ① 제34조의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으로 병원장을 둔다. 대학의 장은 병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② 병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임용일부터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④ 병원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당해 병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36조 2(기타사업 등) 이 법인 및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2.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3. 사회복지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6 장 해 산

제 37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기증한다.

제 39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7 장 교 직 원

제 1 절 대학교원

제 1 관 임 명

제 40 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대학의 장의 자격 및 선임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 객원교원, 특임교원, 초빙교원, 산업체 겸임교원은 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신분보장 및 징계는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관 제48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7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6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강 사 : 1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교원의 임용은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 40 조의 3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 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 대학의 장은 교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대학의 장은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조의 4 (삭 제)

제 40 조의 5(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 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40 조의 6(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 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40 조의 7(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편제정원 기준 교원법정정원의 18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0조 의 8(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1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고용 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 42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 2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 43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4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및 품위를 손상시킨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 46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의 보수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7 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 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 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8 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제 48 조의 2(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교직원 중 1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8 조의 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 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 49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0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 제40조 제②항의 교원에 대하여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40조의 2의 제1항 제4호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 51 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52 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대학의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3 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4 조(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5 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56 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 57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위원장 1인 포함)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57 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3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58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9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60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0 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0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1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2 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2 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2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3 조(징계의결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3 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63 조의 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64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5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 심 위 원 회

제 66 조 - 제 79 조 :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및 조 교

제 80 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81 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유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며 신분보장 및 징계는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82 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3 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84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 86 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 8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7 조(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장을 두며 국장은 참사 또는 부참여로 하고, 그 외 일반직 직원 약간인을 둔다.

제 2 절 대 학

제 88 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 89 조(하부조직) ① 대학에는 교무처, 입학홍보협력처, 학생성공처, 산학협력처, 행정지원처, 전략기획처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처에 두는 조직 및 분장 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9 조의 2(산학협력단) ①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조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하며, 단장으로 임명된 자는 특별법인의 1인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 90 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 및 부설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1 조 (삭제)

제 3 절 유 치 원

제 92 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 원감, 교원과 별표3과 같이 일반직원을 두며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유치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절 정 원

제 93 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 과 같다.

제 9 장 보 칙

제 94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 95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96 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	임 의 선	1919. 9. 19	4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43-1
"	강 석 봉	1913. 7. 13	4년	인천직할시 중구 을목동 237
"	오 귀 섭	1925. 2. 20	4년	인천직할시 동구 금곡동 33
"	조 문 사	1916. 5. 28	4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0
"	리만엘헤일	1921. 9. 28	4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57-3
"	신 봉 조	1900. 7. 23	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48
"	문 창 모	1907. 4. 23	2년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223-17
"	유 증 서	1916. 2. 10	2년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의리 274
"	로버타지라이스	1917. 5. 29	2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7-4
"	텔마버모오	1916. 2. 19	2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7-4
감사	도날드에프센즈	1926. 3. 19	2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1리 510-2
"	허 합	1917. 2. 2	1년	인천직할시 중구 답동 47-2

제97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행동강령) ①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9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9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5.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6.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설치학교의 변경된 교명은 '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4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40조의3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 심사부터 적용한다.
4.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40조의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② 이 개정 정관 시행 전에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된 감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정 원

총	계	2명
일반직	계	2명

별표 #2

학 교 일 반 직 정 원

총	계	49명
일반직	계	44명
기술직	계	5명

별표 #3

유 치 원 일 반 직 정 원

총	계	3명
일반직	계	1명
기능직	계	2명